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1,512,851	12,345,386
일반회계	354,091,144	10,622,734
특별회계	57,421,707	1,722,651
공기업특별회계	40,983,680	1,229,5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545,031	706,35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438,649	523,159
기타특별회계	16,438,027	493,1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08,893	54,2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843,014	355,29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차입시특별회	575,120	17,25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54,250	25,62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56,750	40,70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459,272천원(일반예비비 63,212,522천원, 목적예비비 4,246,75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